

# 항로표지용품의 개발과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안

임 남 동\*

\*뉴마린(주)

요 약 :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대강국으로, 전쟁이후 짧은 시간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, 항로표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늦은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, 향후 세계에서 항로표지 산업분야도 경쟁력있는 국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, 제도적 지원방안 및 자구노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기술하였다.

핵심용어 : 항로표지산업

**주 제:**  
항로표지용품의 개발과  
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안

**부 제**

1. 항로표지용품의 개발과 수출혁신방안
2. 현행 항로표지법의 개선사항 건의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

**2) 개발 성과와 실태**

- 대형, 중형, 소형 등명기의 개발성과는 국제적 수준의 제품으로 인정되나
- 국내에서 그 수요 및 제품의 추가적 개선과 관련한 법적, 기술적 개선의 노력이 부족
- 수요의 한계
- 기술개발의 연계성과 호환성이 부족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

**1) 항로표지용품의 개발현황**

- 대형등명기의 국산화
- 중형등명기(회전형)의 국산화
- 소형등명기(LED, 250MM)의 국산화
- 집약관리 시스템의 각사별 개발 및 상용화
- 원격 감시제어장치와 각사별 개발 상용화
- 등명기 관련 국산화로 수입절감 효과 40억원
- 집약관리와 첨단화로 해상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
- 기타 음파, 전파, 특수 신호의 장비 개발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

**3) 수출 판로의 실태**

- 기술개발제품의 국제적 인증이 부족
- 국가적 수출 지원이 부족
- 기업의 수출 전략 및 외국 사정에 둔감
- 외산제품과의 비교에서 특정기술 우위 선정과 기술적 개선안의 파악이 어려움
-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이 미약
- 수출 경로가 소규모로 이루어져 국가 브랜드가 취약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

\* newmarine98@naver.com

#### 4) 수출 혁신 방안

- 국가 정책적 수출 지원제도의 활용
- 수출 지원제도의 홍보와 적극적 마케팅
- 국제적 추세와 개발방향 제시와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업체의 참여유도
- 개발차원의 자금 확보와 그에 맞는 기술료의 책정과 정책 필요
-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제시로 개발된 기술의 능동적 호환성의 유도가 필요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

- 제 11조, 제 13조 시술의 마모에 관한 사항
- 13조에는 마모도를 20%로 규정, 11조의 표는 그 규정과 상이

원지름	11조항	13조항
32	28.5	25.6
38	30.4	30.4

- 벌표 표준 부표의 제작시량
- 축간지의 규격을 LDA 2V-400AH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다 나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융통성이 필요
- 수밀검사시 현행 (5~7kg/cm<sup>2</sup>)의 제작 시량과 벌표14의 (1kg/cm<sup>2</sup>)이 서로 상이함
- 레이더 반사기의 제작상의 어려움 (소재의 특성상 3T는 공정상 제작에 어려움이 있고 1.5T정도가 적합하다고 사료됨)
- 항로표지업의 전문 면허제 도입 필요
- 전문 면허의 부재로 비 전문 업체의 양성
- 항로표지 자격사 관련 법규 검토 필요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

-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교육 및 해외 동향의 홍보와 기술 홍보
- 외국 사고사례전파와 개선점의 제시로 제품의 기술적 질적 향상을 유도
- 활발한 국제활동(IALA, IMO, IHO) 전개
- 국내 장비검사기관의 국제 인증기관으로의 지위향상 필요
- 품질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정신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

#### 2. 현행 항로표지법의 개선사항 건의

- 시행규칙 제7조 벌표1
  - 설치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할 용품의 수량이 정확하지 않음
  - 교량등의 경우(R2, W2, G2, Y4) 예비품의 보유는 2대이지만 지방청에 따라 색깔별로 요구하러 하는 곳도 있음
  - 전구 예비품은 1년 분이지만 정확한 수량이 근거가 되지않아 모호 (LED 등명기의 부품에 관한 규정이 없음)
  - 비교란에는 위약관리시 계약되어 있으면 예비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확한 조건 제시가 필요
- 예) 시설의 경우 그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함
- 운영 표준명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3
  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마다 교체해야 한다
  - 특별한 경우의 사항 기준이 모호
  - 국유역 지형과 시설의 사항을 구분하여 그 공사기간이 기준을 성을 시 설계당시에 부연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갈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

NEW MARINE ENGINEERING CO., LTD.